

#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년 5월 6일 부천시의회회의장

나. 회부일자 : 2009년 5월 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5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2009. 5. 18.) 상정 및 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행정복지위원회 송원기의원)

## 2. 개정이유

- 부천시 주택조례 제8조에 의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는 내용과 1회 지원을 받으면 향후 5년간 지원받을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조금지원 금액을 확정·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지원대상 공동주택을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확정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한 보조금 신청 금액 대비 배정 금액이 너무 적어 반납하겠다는 민원대두와 5년간 1회로 모든 지원사업을 제한한다는 모순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동일한 사업으로 5년 이내에 중복하여 다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도록 개정함.  
(안 제8조)
- 보안등 및 지하주차장내 초절전형 고효율 등기구 교체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온실가스를 줄이는 저탄소정책에 부응하여 국가시책인 녹색성장 산업에 부응하고자 함.  
(안 제9조)

###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 현행 조례에 공동주택의 규모와 우리시에 확보된 예산은 얼마인가?		○ 공동주택의 최소 규모는 20세대이며 2009년도 예산확보는 2억원임.	
○ 금년도 보조금 지원 실적 및 지급 기준은 있는지?		○ 보조금 지원 기준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2009년도 지원실적은 15개 단지 2억원임.	
○ 공동주택 보조금 지급 시 고효율 등기구 보수 및 교체 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리시는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 현재는 예산부족으로 지원이 불가능하며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보조사업을 확대 지급하고자 할 계획임.	
○ 우리시의 공동주택은 약87%인데 공동주택에서는 보조금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며 현재 개정안에 따르면 5년 이내에도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형평상에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시 우선지원대상자 등을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보조사업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8. 덧붙임 : 부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부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제413호
의결 년월일	2009. 5. 21. (제152회)

제안년월일 : 2009. 5. 18.

제안자 : 건설교통위원장

## 1. 수정이유

- 우리시는 노후 된 아파트가 많아 이에 필요한 예산은 많이 필요한 현실이나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이 예상됨. 주택 보조금 지원 시 아파트의 보조금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의 지원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타당함

## 2. 주요골자

- 부천시 주택조례 제9조제1항제1호 현행조례 대로 시행
  - 공동주택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현행대로 공동주택단지 안에 시설된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제한하도록 함.

# 부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1항제1호 중 “공동주택단지 안에 시설된 보도·보안등  
및 지하주차장 고효율 등기구 보수·교체사업”을 “공동주택단지  
안에 시설된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천시 주택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8조(보조금의 지원)</p> <p>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에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은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제9조제1항 제6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8조(보조금의 지원)</p> <p>③ ----- 공동주택은 동일한 사업으로 5년 이내에 중복하여-----</p>	<p>제8조(보조금의 지원)</p> <p>③ 개정안과 같음 ----- ----- ----- -----</p>
<p>제9조(보조사업의 종류)</p> <p>① (생략)</p> <p>1. 공동주택단지 안에 시설된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p>	<p>제9조(보조사업의 종류)</p> <p>① (생략)</p> <p>1. ----- ----- 보도·보안등 및 지하주차장 고효율 등기구 보수·교체사업</p>	<p>제9조(보조사업의 종류)</p> <p>① (생략)</p> <p>1. 공동주택단지 안에 시설된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p>

[수정안 포함]

##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3항 중 “후에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은”을 “공동주택은 동일한 사업으로 5년 이내에 중복하여”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보조금의 지원) ①·② (생략)</p> <p>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에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은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제9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8조(보조금의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공동주택은 동일한 사업으로 5년 이내에 중복하여----- ----- -----.</p>